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8
----------	-----

제출연월일: 2015. 4.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1. 제안이유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며, 지난 19년간 종량제수수료 동결로 인해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마련 (안 제29조제1항)

- 그간 종량제수수료는 수집·운반비 명목으로 전액 대행업체의 수익으로 운영되었으나 종량제수수료를 구 세입예산으로 편입하여 「지방재정법」 취지를 준수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체납 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안 제31조제2항)

- 상위법에 가산금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고, 현실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미리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비쳐볼 때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체납되어 가산금 부과할 상황이 발생치 않음.

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 표준안(공통가격)에 의거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별표 3)

- 별표 3의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서울특별시가 연구하여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여 쓰레기 원천감량을 달성하려는 것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5. 3. 13. ~ 4.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중량제봉투 가격표(제16조제2항 관련)

[일반중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구 분	가정용 판매가격		영업장용 판매가격		사업장용 판매가격	
	2015년	2017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5리터	120	130				
10리터	220	250				
20리터	440	490	470	520	720	800
30리터	660	740	700	780		
50리터	1,100	1,250	1,200	1,330	1,800	2,000
75리터			1,800	2,000		
100리터			2,400	2,680	3,600	4,000

[특수중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용 량	관 매 가 격	
	2015년	2017년부터
50리터	4,590	5,1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u>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 --<u>위임된</u> ----- ----- --.</p>
<p>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 ① <u>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하며,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는 반입수수료를 봉투 가격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생략)</p>	<p>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 ① <u>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가산금 등) ① (생략)</p> <p>② <u>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형생</u></p>	<p>제31조(가산금 등) ①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표(제16조제2항 관련)

[일반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구 분	가정용 판매가격	영업장용 판매가격	사업장용 판매가격
	5ℓ	90	
10ℓ	180		
20ℓ	350	470	480
30ℓ	520	700	
50ℓ	860	1,160	1,210
75ℓ		1,740	
100ℓ		2,330	2,420

[특수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용 량	판 매 가 격
50ℓ	2,790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표(제16조제2항 관련)

[일반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구 분	가정용 판매가격		영업장용 판매가격		사업장용 판매가격	
	2015년	2017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5리터	120	130				
10리터	220	250				
20리터	440	490	470	520	720	800
30리터	660	740	700	780		
50리터	1,100	1,250	1,200	1,330	1,800	2,000
75리터			1,800	2,000		
100리터			2,400	2,680	3,600	4,000

[특수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원)

용 량	판 매 가 격	
	2015년	2017년부터
50리터	4,590	5,100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종량제 수수료의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안으로 이로 인해 특별한 비용발생사항은 없으므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청소작업팀 이승근
연 락 처	2286 - 5530

## < 관 계 자 료 >

### □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서울시 공통)

(단위 : 원/매)

구분	인상 단계별	가 정 용						영 업 용					사 업 장 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20ℓ	50ℓ	100ℓ
						일반	특수								
일 반 쓰레기	현재가격 (상동구)	90	180	350	520	880	2,790	470	700	1,160	1,740	2,330	480	1,210	2,420
	1 단계 인 상	120	220	440	660	1,100	4,590	470	700	1,200	1,800	2,400	720	1,800	3,600
	2 단계 인 상	130	250	490	740	1,250	5,100	520	780	1,330	2,000	2,680	800	2,000	4,000

### □ 전국 시·도 종량제봉투가격

(20ℓ, '14년 기준)

구 분	전국평균	광역시평균	우리 구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봉투가격(원)	457	650	350	363	850	430	620	740	660

### □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5. 1.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년 4월 13일.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5년 4월 14일

다. 상정일자: 2015년 4월 23일

(제217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 2. 제안이유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며, 지난 19년간 종량제수수료 동결로 인해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마련 (안 제29조제1항)

- 그간 종량제수수료는 수집·운반비 명목으로 전액 대행업체의 수익으로 운영되었으나 종량제수수료를 구 세입예산으로 편입하여 「지방재정법」 취지를 준수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체납 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안 제31조제2항)  
- 상위법에 가산금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고, 현실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미리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비쳐볼 때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체납되어 가산금 부과할 상황이 발생치 않음.

다.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 표준안(공통가격)에 의거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별표 3)

- 별표 3의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서울특별시가 연구하여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현하여 쓰레기 원천감량을 달성하려는 것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입법예고(2015. 3. 12. ~ 4.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던 종량제 수수료의 구 예산 편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표준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 안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 및 처리비 부담)를 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고 개정하였는데,
  - 이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2014. 4. 2.)에 따라

☞ 독립채산제: 대행업체가 종량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배출자, 배출량, 수수료에 대해서는 추후 구청에 보고하는 처리방식

-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종량제 수수료의 구 예산 편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상적 세입·세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31조(가산금 등)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의 체납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 현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부 받거나,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뒤 신고필증을 출력하는 방식으로서,
  - 실제로는 체납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체납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함은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또한 개정안 [별표 3]에서는 종량제봉투의 판매 가격을 2개년(2015, 2017)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는데,
  - 이는 자치구별로 다른 현행 종량제 수수료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한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가격을 정한 것으로서, 자치구 공통적인 금액이므로 가격인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폐기물 감량 및 구 재정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 시행 시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저항 및 주민불만이 예상되므로, 가격인상에 앞서 사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또한, 독립채산제가 폐지되는 만큼 대행업체의 대행원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